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431~436p	문제-본문	[발행일 이후 법 개정사항] 수산물 표준규격 (1) 목적(제1조)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(표준규격)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(권한의 위임) 제5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(표준규격의 제정) 내지 제7조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(2) 정의(제2조) ⑧ "포장재료"란 수산물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, 그물망, P.P, P.E, P.S, PPC 등을 말한다. (4) 포장치수(제4조) 수산물의 포장치수는 [별표 2]에서 정하는 한국산업규격(KS M3808)에서 정한 발포폴리스타이렌(P.S) 상자의 포장규격 및 한국산업규격(KS A1002)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 T-11형 팻릿(1,100×1,100mm)의 평면 적재효율이 90% 이상인 것을 우선 적용하고, 높이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높이로 한다. [별표 2] 수산물의 표준포장규격 내 [주] ● 포장규격 : 한국산업규격 수송포장계열치수(KS A1002) 또는 적재효율 90% 이상인 신규 규격을 우선 적용 ● 1단 적재 상자수 : KS A1002의 T-11 표준 팻릿(1.1mX1.1m)에 1단으로 적재 시 상자 개수 (5) 포장치수의 허용범위(제5조) ① 골판지 상자 및 발포폴리스타이렌 상자(P.S)의 포장치수 중 길이, 너비의 허용범위는 ±2.5%로 한다. ② 그물망, 직물제포대(P.대), 폴리에틸렌대(P.E대)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길이의 ±10%, 너비의 ±10mm,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·너비의 ±5mm로 한다. (6)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(제6조)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[별표 3]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 [별표 3]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1. 골판지 상자 ② 골판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A1059(상업포장용 골판지), KS A1502(외부포장용 골판지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2. P.F대(폴리에틸렌대)	[발행일 이후 법 개정사항] 수산물 표준규격 (1) 목적(제1조)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(표준규격)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(권한의 위임)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(표준규격의 제정)부터 제7조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(2) 정의(제2조) ⑧ "포장재료"란 수산물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, 그물망, PP, PE, PS, PPC 등을 말한다. (4) 포장치수(제4조) 수산물의 포장치수는 [별표 2]에서 정하는 한국산업규격(KS M3808)에서 정한 발포폴리스타이렌(P.S) 상자의 포장규격 및 한국산업규격(KS T1002)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 T-11형 팻릿(1,100×1,100mm)의 평면 적재효율이 90% 이상인 것을 우선 적용하고, 높이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높이로 한다. [별표 2] 수산물의 표준포장규격 내 [주] ● 포장규격 : 한국산업규격 수송포장계열치수(KS A1002) 또는 적재효율 90% 이상인 신규 규격을 우선 적용 ● 1단 적재 상자수 : KS A1002의 T-11 표준 팻릿(1.1mX1.1m)에 1단으로 적재 시 상자 개수 (5) 포장치수의 허용범위(제5조) ① 골판지 상자 및 발포폴리스타이렌 상자(PS)의 포장치수 중 길이, 너비의 허용범위는 ±2.5%로 한다. ② 그물망, 직물제포대(PP대), 폴리에틸렌대(PE대)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길이의 ±10%, 너비의 ±10mm,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·너비의 ±5mm로 한다. (6)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(제6조) ①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[별표 3]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 ② ①에도 불구하고 포장재료의 압축·인장강도 및 직조밀도 등에서 [별표 3]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이 인정되는 경우 공인검정기관 성적서 제출 등을 통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. [별표 3]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1. 골판지 상자 ② 골판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1018(상업포장용 미세골 골판지), KS T1034(외부포장용 골판지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2. PE대(폴리에틸렌대)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② 등급규격이 정하여진 품목 중 발포폴리스타이렌 상자(PS) 포장 가능한 품목은 [별표 2]에서 정한 포장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.			
437~462p	문제-본문	[발행일 이후 법 개정사항] [별표 5] 수산물의 종류별 등급규격 일괄 개정사항 KS A1502(외부포장용 골판지) → KS T1034(외부포장용 골판지) 적용항목 : [1] 복어, [2] 굴비, [3] 마른문어, [9] 냉동오징어 KS A3509(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) → KS T1093(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) 적용항목 : [1] 복어, [3] 마른문어, [4] 생굴, [7] 새우젓, [8] 멸치젓, [10] 간미역 KS A1515(폴리에틸렌 병) → KS T1047(폴리에틸렌 병) 적용항목 : [4] 생굴, [7] 새우젓, [8] 멸치젓, KS A1037(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) → KS T1015(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) 적용항목 : [6] 고막 KS A1507(폴리프로필렌 밴드) → KS T1039(폴리프로필렌 밴드) 적용항목 : [10] 간미역 표시사항 : 품명, 산지, 생산년·월, 등급, 무게, 취급상 유의사항, 생산자 성명·주소(전화번호) → 표시사항 : 품명, 산지, 등급, 무게, 취급상 유의사항, 생산자 성명·주소(전화번호)	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506~509p	문제-본문	[발행일 이후 법 개정사항] (506~507p) 표 내 1. 중금속 1) 총수은 2) 메틸수은 3) 납 4) 카드뮴 2. 동물용 의약품 등 1) 옥시테트라사이클린/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/테트라사이클린(합으로서) 2) 독시사이클린 3) 클로람페니콜 4) 스피라마이신 5) 옥소린산 6) 플루메퀸 7) 엔로플록사신/시프로플록사신(합으로서) 8) 설파제의 총합으로서 9) 아목시실린 10) 암피실린 3. 마비성 패독(PSP) 4. 복어독 5. 타르색소 6. 세균수 7. 분변계대장균 8. 대장균군 (509p) 표 내 23. 첨가물 및 보존료 24. 식중독균 가. 장염비브리오 나. 살모넬라 다. 황색포도상구균 라.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	위 항목들 표에서 삭제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